

『구미시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. 불량주택이 밀집된 사업지구에 건축법 및 주차장 등 관계법령에 의한 건축기준을 배제 또는 완화 적용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건축법적용의 특례규정을 두어 일정규모 범위 내에서 관계법령의 적용을 배제 또는 완화 적용함.(제2장)
 - 건축법 제33조(대지와 도로와의 관계)⇒ 주거용 건물은 적용배제 함
 - 건축법 제36조(건축선의 지정)⇒ 주거용 건물은 적용배제 함
 - 건축법 제37조제2항(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)⇒ 주거용 건물은 적용배제 함
 - 건축법 제47조(건폐율)⇒ 80%이하(내화구조는 90%이하)완화적용 함
 - 건축법 제48조(용적률)⇒ 500%이하 완화적용 함
 - 건축법 제51조(건축물의 높이제한)⇒ 완화적용 함
-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(국민주택채권의 매입)⇒ 완화적용 함(제3장)
- 주차장법 제19조(건축물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) ⇒ 완화적용 함(제4장)
- 사업지구내 무상 양여된 국.공유지의 관리처분 규정을 둠(제6장)

4. 참고사항

○ 관련법령

- :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- :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
- : 건축법 및 시행령
- :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(준칙)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. 불량주택이 밀집된 사업지구에 관계법령에 의한 건축기준을 배제 또는 완화 적용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, 건설교통부 훈령 제286호 표준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기준(2000. 8. 7)에 의거 제정하는 것으로서,
-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법.주택건설촉진법.주차장법.국토의계획이용에 관한법률 적용의 특례, 양여된 토지의 관리 처분 등 17개조와 부칙2개조로 구성되어 있음.
-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준칙(훈령)에 의거 제정하는 조례로서
-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